

#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4.02.01. 개정 2024.05.02. 개정 2026.02.0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에 대한 양질의 교수·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원격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
2. 원격교육매체 개발 및 제작 지원
3. 원격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교수자 교육 지원
4.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지원
5. 학습관리시스템(LMS) 및 기타 원격수업용서비스 유지 관리
6. 원격교육과 관련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7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원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

제3조 (조직)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.

1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, 본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<삭제 2024.05.02.>
3. 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<개정 2026.02.09.>

제5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본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4.02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5.0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6.02.09.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